

1. 예산총칙

2024년도 추경 3 회

제 1 조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705,144,600	21,154,338
일반회계		653,420,050	19,602,602
특별회계		51,724,550	1,551,737
기타특별회계		51,724,550	1,551,737
	공무원아파트특별회계	10,432,885	312,987
	중소기업및소상공인육성기금운용특별회계	3,506,874	105,206
	산업단지조성특별회계	279,500	8,385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804,606	24,138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5,395,449	161,863
	자활및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893,906	26,817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717,947	21,538
	상수도사업특별회계	4,555,328	136,660
	수질개선특별회계	21,118,055	633,542
	농업발전기금특별회계	4,020,000	120,600

제 2 조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서"와 같다.

제 3 조 일반회계 예비비의 총액은 31,547,280천원이며, 재해·재난 예비비 26,047,280천원을 포함한다.

제 4 조 2024년도 지방채 발행 한도액은 41,200,000천원으로 한다.

제 5 조 지방재정법 제47조의2 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

제 6 조 최종 추경예산 성립 후 국가 등으로부터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는 당해연도 예산으로 간주처리 하고 이를 서면으로 의회에 보고한다.